

수원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3나1062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3나106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가합112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모

변론종결 2023. 7. 13.

판결선고 2023. 8. 3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가합112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8. 접수 제496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은”을 “기술신용보증기금(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2016. 3. 29. 법률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으로 개정되면서 위 기금의 명칭이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은”으로 고치고, 그 이하의 각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중 “피고들과”를 “피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 E, F(이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 8행 중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를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중 “피고들”을 “피고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중 “이하” 오른쪽에 “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피고 C 주식회사”를 “피고”로, “피고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D”로, “피고 E”을 “E”으로, “피고 F”를 “F”로 각 고치고, 그 이하의 각 “피고 C 주식회사”를 “피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두 번째 행 중 “이후 A이”를 “A은 2021. 7. 2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중 “피고들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 15행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중 “주문 기재 각”을 “이 사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중 “대위변제채무만도”를 “구상금채무만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중 “피고들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두 번째 행 중 “부족하고”를 “부족하고(피고가 A과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해왔는데 위 일부 연체금 외에는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거나,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민사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부인권의 행사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인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소영, 판사 나 청, 판사 김나영